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1. 범죄피해자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적 견제 장치까지 모두 폐지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지연과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수사, 암장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 및 통제 기능이 모두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상의 흠결이 그대로 공소제기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구제되지 못하거나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절차 및 수사자료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수사 주체의 다변화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진술을 반복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사법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가 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도 권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 규정의 명문화(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조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회복될 권리이기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로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절차 전반에서 피해자가 수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검찰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 본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¹ 해당 문서는 2026. 5. 21. 여성위 월례회 발제 및 논의사항까지 반영하여 작성된 의견입니다.

실질화하는 데 있다.

2. 검사의 수사권 및 직무 범위

가. 검사의 보완수사 및 별건수사

- 2022년 검찰개혁 당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부 특수부 사건에서 인지수사, 별건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적 수사의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따라 검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 대상을 정하고 개시하는 인지수사와 달리, 경찰이 이미 구성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수사 남용의 폐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공소의 완결성과 유지를 위해 여전히 필수적이다. 보완수사권 없이 서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강제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부실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충실한 수사와 재판물을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 현재의 보완수사 ‘요구권’ 제도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고, 기관 간 사건 이송이 반복되면서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 장기화는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에 그치지 않고,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범죄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나 살인, 강도, 성폭력, 산재사망, 교통사망 등 강력범죄·생명침해범죄에서 절차 지연이 미치는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1안)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허용하는 방안

제196조(검사의 직무)

- ①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규정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중대범죄수사청 포함)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있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사건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현행유지)

제198조(수사 준수사항)

- ④ 검사가 제196조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는 별건 수사로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2안) ‘일정한 범죄 유형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제196조(검사의 직무)

- ①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규정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중대범죄수사청 포함)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있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사건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196조 제2항에 규정된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단,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안) 모든 범죄 유형에서 보완수사 허용하는 방안

제196조(검사의 수사)

-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② 검사는 송치를 받은 즉시, 피해자 등에게 사건의 중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등에게 사건에 대한 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삭제)

제198조(수사의 준수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나.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 및 전건송치 제도

- 2022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도록 한 구조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왔다. 경찰의 부실수사의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취약 계층의 경우, 사건의 암장을 더욱 용이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검찰의 견제 및 통제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 전건송치제도가 전면 복원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및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검사가 처분 전 피해자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

(1안) 전건송치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안) 사건의 불송치 종결권은 유지하되 특정죄명 등의 경우 전건 송치하는 방안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가. 살인, 강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다.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검사의 법률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2. 제1호 외의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신설]

① 피해자는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제258조(불기소처분)을 하기 전에 전1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재수사요청권 [전건송치제도가 복원되지 않는 경우]

- 나.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처분을 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위법하여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동일 수사관이 자신의 수사상 위법을 스스로 시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경찰서 내 다른 수사관이 동료 수사관이 위법하게 수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재수사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수사의 주체를 수사경찰서의 관할 시도경찰청 내지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하도록 한다.

(1안) 국가수사본부가 재수사하는 방안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재수사에 관련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안) 상급 경찰관서에서 재수사하는 방안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의 직급 상급 경찰관서가 재수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은 재수사할 경찰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재수사의 관할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조항

가.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수사진행상황’까지 확장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 기간 중에도 수사 상황통지를 기간을 정하여 의무화한다.

제245조의8(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등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사를 개시한 날
2.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자적 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1. 피해자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지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 조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통지 내용 및 법적 의미를 피해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

- 현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정보공개신청’ 제도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제한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과정을 감시하고 이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전제로서 (정보공개신청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 관련 정보(피해자가 촬영되었으나 피해자 제출자료가 아니라고 열람하여 주지 않던 CCTV 영상, 심리생리검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절차에 의하더라도 공개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사 중	피해자 자신의 진술·제출 자료(실무상 제한)	검사	명시 규정 없음
공판 계속 중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	재판장	<u>형사소송법 제294조의4</u>
재판 확정 후	누구든지(권리구제·학술 연구·공익 목적)	검찰청	<u>형사소송법 제59조의2</u>
재정신청 심리 중	원칙적 제한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제245조의11(고소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설]

- ① 고소인, 고발인 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등과 관련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 만약 위에서 검토한 전건송치제도가 복원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가 피해자인 범죄, 내부 고발, 정치 부패 사건 등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제3자인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할 필요 있다. 시민단체나 공익기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 수사의 부당한 종결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 만약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 경찰이 왜 수사를 종결했는지 상세한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자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도 반드시 그 전제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별도로 수사 중 발생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미진, 수사지연, 편파 수사 등에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①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② 국가수사본부 또는 상급 시도경찰청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의 경우,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입건 전 조사, 수사절차 또는 그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법률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해당 사건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에 의한 기관 상설화 논의가 필요하다. ②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 사법경찰관의 개별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245조의12(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①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고소·피해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 및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수사기관이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4. 제245조의8(예시: 통지관련조항)에 따른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결정을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변경 또는 수사부서의 재지정
2. 사건처리 목표기한, 수사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수사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급기관의 장(현재라면 경찰서라면 경찰청, 지방검찰청이라면 고등검찰청)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급기관의 장은 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심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결정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가. 재정신청 제도

1)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보장

-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구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극히 낮은 인용률로 제도가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고발인은 형법상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공익 제보, 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고발인의 재정신청권을 보장하여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제260조(재정신청)

- 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도 포함한다)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시,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증인보호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

2)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07년 개정으로 법원이 공소제기명령을 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극적으로 소송에 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로 인한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단순히 공소가 제기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목적이 달성된다.
따라서 종래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262조의2(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신설)

- ①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행사한다.
- ③ 지정변호사의 자격, 임명 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의4(재정신청 절차에서의 조력) (신설)

- ① 재정신청을 한 피해자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 절차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나. 피해자 진술권 강화 : 의견진술 절차의 명확화 및 실질화

-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은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어 하위 규범이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무상 많은 수의 피해자는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공소사실 사항과 양형사유를 구별하지 못한 채 진술하게 되고,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의견진술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 또한 피해자가 탄원서·의견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의 진술권 행사는 공소사실 사항과 양형사유가 혼재되어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자료에 노출되고,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 신청 시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증인의 지위를 벗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제외한 진술조력인, 비디오 중계장치, 차폐시설 등 보호장치의 준용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과 안전 위협으로 끝내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① 피해자가 증인신문과 별도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② 법원이 청취한 피해자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자 한다.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③ 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및 그 밖에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청취한 피해자등의 의견 중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 현행 실무에서 양형심리는 피고인 중심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 내용과 회복 여부가 체계적으로 수집·반영되는 절차가 없다. 개정안은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때 피해자의 피해 결과·회복 여부·처벌불원 의사·양형 의견 등을 함께 조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생명·신체 침해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 및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296조의3(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는 제1항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힌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범죄

③ 제1항·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판결전조사 결과 중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은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라.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증거 인멸, 공범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사실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해자가 재판 정보에서 소외되고 적절한 의견 진술 기회마저 잃게 된다. 더욱이 민사소송 제기나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시 형사재판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제한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법원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상 유선으로 불허 통지만이 이루어지고 그 사유도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송기록에 불허결정과 사유가 남지 않는 구조는 법원이 신청을 쉽게 불허하게 만들고, 일시 유보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불허된 것으로 오해하여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록 접근권을 명확히 보장하고자 한다.

제294조의4(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 불허가하거나 일시 유보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 유보하는 결정의 서면에는 그 보류 기간과 재신청이 가능한 요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마. 불필요한 변론 제한을 위한 신문 내용 및 절차 규정

- 성범죄 재판에서는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사생활에 관한 신문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하여 피의자·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거나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과 대면하거나 반대신문을 받으며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문사향을 사전에 통제하는 절차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공판준비절차 활용 방안이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은 2023. 7. 11.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규정을 신설하였는바(제40조의2), 동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 출석(제3항), 피해자변호사 출석(제4항),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문사향 사전 서면 제출(제5항), 신문사향·방법에 관한 의견 청취(제6항)를 보장하고 있다. 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의 공판준비절차는 모두 "신문사향 사전 검토를 통한 2차 피해 차단"이라는 공통 목적을 갖는바,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절차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신설)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신설)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향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향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

2.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

④ 제3항에 따른 증거 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는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6조의5의2(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신설)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판준비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3. 그 밖에 재판장이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변호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문사항에 관하여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신문사항·신문방법·신문순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참고]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다른 성적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경향이나 이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Federal Rules of Evidence 412(a)]. 이를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이라고도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을 질문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는 명예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절차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편견을 야기하여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불필요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신고를 장려하며,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성관계 이력 등을 신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년 미시간 주에서 최초로 강간피해자보호법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연방의회는 1978년 성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Protection for Rape Victims Act) 통해 명시적으로 성관계 이력 등의 신문을 금지하였고, 현재는 연방증거규칙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사건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적 행위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의 동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외 해당 증거의 배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제출이 허용된다[Federal Rules of Evidence 412(b)(1)].

바. 법관 기피신청권 신설

- 현행법은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피고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사. 피해자 참가제도 신설

1) 해외 입법례 - 일본의 참가제도

- 일본은 2007. 6. 20.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2008. 12. 1. 시행하면서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피해자참가인에게 검찰의 소송행위에 관한 의견진술권, 증인 및 피고인 질문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단순히 검사의 보조자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평가된다. 일본 형사절차 내 피해자는 일반적인 고소인·증인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형사재판에 피해자참가 허가를 받아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주체적 지위가 또한 인정된다.
- 피해자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상범죄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이다.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 제1항에 한한다. ① 고의범으로 사람을 사상시킨 죄, ② 부동의추행·부동의성교 등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약취·유괴·인신매매 관련 죄, ③ 그 외 관련 범죄, ④ 자동차운전치사상 관련 죄, ⑤ 위 죄들의 미수죄가 포함된다.
- 일본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571명의 참가신청인 중 560명이 허가를 받았고(허가율 98% 상당), 2022년 1,496명의 참가신청인 중 1,476명이 허가를 받아(허가율 99% 상당), 피해자참가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참가를 허가하고 있다.
- 피해자참가인은 검사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당해 권한의 행사·불행사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5). 피해자참가인이 이유를 제시하여 권한 행사를 요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검사가 권한 불행사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피해자참가인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참가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하여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고(제316조의36), 피고인 신문도 요청할 수 있으며(제316조의37), 변론기일에 소인으로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16조의38).

- 일본은 독일·프랑스와 달리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참가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신문·피고인질문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러한 권한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피해자참가제도가 검사와 피해자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검사의 소추권 사이의 조화를 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 또한 '피해자참가'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등장한다는 자체로 절차적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를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해외입법례 -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 독일의 부대공소제도는 일정한 중죄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여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부대공소권자는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법익이 침해되어 특별히 보호가 요청되는 자로서 일신전속적 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제395조 제1항), 위 범죄로 사망한 자의 유족 등(제395조 제2항 제1호), 기소강제절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해자(제395조 제2항 제2호)로 한정된다. 그 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대공소권을 인정하고 있다(제395조 제3항). '특별한 사유'는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표적으로 '범죄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가 있다.
- 부대공소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참가표시를 할 수 있고, 확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참가표시를 할 수 없다(제395조 제4항). 법원은 부대공소참가의 요건을 심리하여 참가 가부를 결정한다(제396조 제2항).
- 부대공소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제397조 제1항), 기소장 송부 요구권을 가지며(제201조 제1항 제2문), 기록 열람권을 가진다(제406조e 제1항). 과거에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으나, 2018. 1. 1. 독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부대공소인은 원칙적으로 검사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검사에게 통지되는 사항들은 부대공소인에게도 통지되어야 하고, 검사에게 인정되는 절차참여권과 동일하게 부대공소인의 절차참여권이 인정된다. 부대공소인은 법관·감정인에 대한 기피권 및 질문권(제24조, 제31조, 제74조, 제240조 제2항), 재판장의 명령·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제238조 제1항, 제242조), 증거신청권(제244조 제3항~제6항), 의견진술권(제257조, 제258조)을 가진다(제397조 제1항). 그 외 부대공소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된다(제400조, 제401조).

3) 개정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죄)·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부분에 한함)·제31장(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중 본 의견서에서 적시하는 조문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해자측참가인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6은 피해자참가인(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 보고 위치한다.

[신설] 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경우를 신문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 ⑤ 제161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제294조의11(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294조의10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제294조의12(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신설/개정]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조항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